

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

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(☎ 044-201-3412)

▶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

•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행위를 일부 제한합니다.

-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경우

-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 >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

<행정처벌 받은 자의 중개행위 근원적 방지>

▶ 추진배경 :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행위를 계속하는 방편으로 악용

▶ 주요내용 :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

①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

②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다른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

▶ 시행일 : 2013.12.5.